

지난해 육아휴직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 남성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4년	132,535명 (+6,527명 5.2%↑)	26,627명 (+3,439명 14.8%↑)	79,368명 (+4,832명 6.5%↑)	18,241명 (+2,444명 15.5%↑)	256,771명 (+17,242명 7.2%↑)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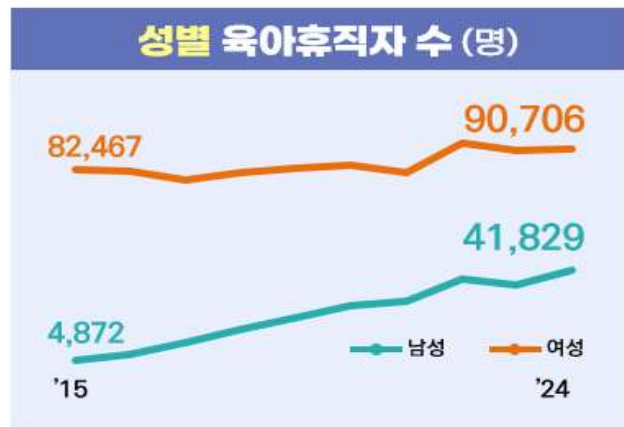
* ('20) 112,038명 → ('21) 110,555명 → ('22) 131,084명 → ('23) 126,008명 → **(24) 132,535명**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임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 ('15) 4,872명(5.6%) → ('17) 12,042명(13.4%) → ('20) 27,421명(24.5%) →
(22) 37,884명(28.9%) → ('23) 35,336명(28.0%) → **(24) 41,829명(31.6%)**

이는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용자 수는 51,761명으로, '23년 2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 (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
(후)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사용시** 급여 인상(최대 월 450만원<부부 합산 9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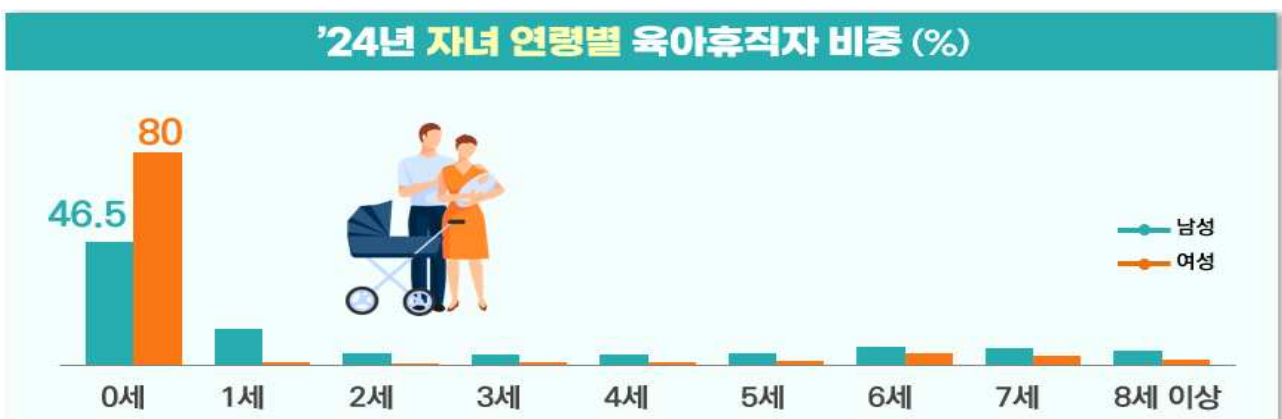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5.1.1.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1.1.부터 30일 영업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2.6% 증가했고, 특히 남성은 69.2% 증가했다.

< 육아휴직자 수(1.1. 이후 30영업일 기준)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4.1.1.~2.14.	3,420	9,623	13,043
'25.1.1.~2.18.	5,788(+69.2%)	12,817(+33.2%)	18,605(+42.6%)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 지속 증가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4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5,311명(56.8%)로 '23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0,128명(45.4%)로 '23년 대비 0.9%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년 기업규모별 사용자 수 (명, %)



최근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중 (%)

*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비중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14.8%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6,627명으로, '23년 23,188명에 비해 3,439명 증가했다. 아직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으나, 지난해 14.8% 증가하여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 5.2%의 2.8배로 제도의 확산 속도는 더 빠르다. '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6,718명)를 차지하여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를 차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24년 육아기 단축 사용자 수(명)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



<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24년	6,380 (24.0)	4,539 (17.0)	3,382 (12.7)	2,966 (11.1)	9,358 (35.1)

자녀 연령별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사용이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7세 사용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3시간(일 평균 약 2.5시간)이고, 하루 평균 2시간 이하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 사용자의 65.8%로 나타났다.

< `25년 일·육아지원제도 대폭 확대 >

'25년에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고,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최대 2,310만원 지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첫째 달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한부모인 경우는 첫 3개월 급여가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업무 분담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부: 중소기업 1,440만원,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자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120만원) ⇒ 최대 1,840만원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장지훈 (044-202-7412) 임지우 (044-202-7475)



붙임 1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

1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상한액 인상 등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성에서 크게 증가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17년		12,042 (13.4)	78,080 (86.6)
'18년		17,662 (17.8)	81,537 (82.2)
'19년		22,297 (21.2)	82,868 (78.8)
'20년		27,421 (24.5)	84,617 (75.5)
'21년		29,041 (26.3)	81,514 (73.7)
'22년		37,884 (28.9)	93,200 (71.1)
'23년		35,336 (28.0)	90,672 (72.0)
'24년		41,829 (31.6)	90,706 (68.4)

2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4년 75,31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6.8%

(단위: 명,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규모 기업	52,113 (46.5)	51,868 (46.9)	59,738 (45.6)	55,913 (44.4)	57,215 (43.2)
중소기업*	59,925 (53.5)	58,687 (53.1)	71,346 (54.4)	70,095 (55.6)	75,311 (56.8)
합계	112,038	110,555	131,084	126,008	132,535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구분	전체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19년	105,165	17,843	12,976	12,698	13,861	47,787
'20년	112,038	19,151	14,065	14,391	14,873	49,558
'21년	110,555	18,431	13,875	13,928	14,966	49,355
'22년	131,084	23,056	16,541	16,912	17,434	57,141
'23년	126,008	22,382	16,697	16,914	16,717	53,298
'24년	132,535	23,825 (18.0)	18,384 (13.9)	17,919 (13.5)	17,655 (13.3)	54,744 (41.3)

※ '24년 분류불능(대규모/우선지원 9명, 기업규모별 8명) 미집계

붙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통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 '19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	
		남성	여성
'17년	2,821	321 (11.4)	2,500 (88.6)
'18년	3,820	550 (14.4)	3,270 (85.6)
'19년	5,660	742 (13.1)	4,918 (86.9)
'20년	14,698	1,639 (11.2)	13,059 (88.8)
'21년	16,689	1,632 (9.8)	15,057 (90.2)
'22년	19,466	2,001 (10.3)	17,465 (89.7)
'23년	23,188	2,415 (10.4)	20,773 (89.6)
'24년	26,627	3,270 (12.3)	23,357 (87.7)

2 기업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24년 16,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2.8%

(단위: 명,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규모 기업	5,282 (35.9)	5,600 (33.6)	6,768 (34.8)	8,249 (35.6)	9,907 (37.2)
중소기업*	9,416 (64.1)	11,089 (66.4)	12,698 (65.2)	14,939 (64.4)	16,718 (62.8)
합계	14,698	16,689	19,466	23,188	26,627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등)

(단위: 명)

구분	전체	10인 미만	10인 ~ 30인	30인 ~ 100인	100인 ~ 300인	300인 이상
'19년	5,660	1,787	978	821	613	1,461
'20년	14,698	4,317	2,368	1,737	1,492	4,784
'21년	16,689	5,325	2,614	1,857	1,718	5,175
'22년	19,466	5,659	3,265	2,226	1,904	6,412
'23년	23,188	6,210	4,029	2,733	2,420	7,796
'24년	26,627	6,380 (24.0)	4,539 (17.0)	3,382 (12.7)	2,966 (11.1)	9,358 (35.1)

※ '24년 분류불능(대규모/우선지원 2명, 기업규모별 2명) 미집계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육아휴직

	현행	개선
기간 및 사용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개선
기간	10일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선
대상 및 기간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12세 이하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사용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개선
1 사용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1 사용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1 기간	현행	개선
	90일	100일

난임치료 휴가

	현행	개선
1 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1 정부지원	정부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1 비밀유지	해당없음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알아봅시다



나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모성보호 급여 신청 바로가기

검색창에 **고용24** 검색 ▶ **고용24**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탭 클릭 ▶ **나에게 해당하는 급여** 클릭

모의계산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확인하기

자녀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하려면?

- 1 **고용24** 로그인
- 2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
- 3 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



◆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

수급 이력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하려면?

-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력 ▶ 서비스 수혜이력조회」 경로로 접속
- 3 **서비스이력** 탭에서 ☒ 서비스이력 ▶ ☒ 모성보호 선택, 조회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 4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



지급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하려면?

- 1 **고용24**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 3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 4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 ▶ 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 5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